

검 토 보 고

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1998년 10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.

□ 제안이유

- 현재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목을 확대하고 쓰레기 실명제와 대형 폐기물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을 정하는 한편 소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적기에 배출토록 3ℓ 용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기준을 정하였으며,
- 행정절차법 제정에 따라 청문조항을 삭제하여 쓰레기발생을 최대한 줄여 주민의 부담경감과 자원의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품목을 폐스티로폴류까지 확대함.
(안별표2)
- 나. 3ℓ 용량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.(안별표3)
- 다. 쓰레기봉투에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삽입.(안별표4)
- 라. 대형 폐기물 배출자가 읍·면·동사무소까지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%를 감면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.(안제9조1항)
- 마. 청문조항삭제.(안제21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그간 주부단체 및 관련업계에서 건의된 사항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문제를 개선·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,
- 개정내용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품목을 페스티로폴류까지 확대하고 쓰레기봉투에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을 삽입하는 것은 쓰레기발생을 줄이고 나아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나 일부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이미 페스티로폴류를 분리배출하고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의 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한편, 쓰레기실명제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시 차원의 적극적인 시민제도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3ℓ 용량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새로이 제작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현재 최소용량인 5ℓ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5ℓ 용량의 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모아질때까지 며칠씩 가정에 놓아두어야 하며 여름철의 경우에는 악취까지 발생하는 실정인 바 이를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 9조 1항에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가 읍·면·동까지 이를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%를 감면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토록 한 것은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청문조항은 행정절차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짐.
- 한편, 개정조례안의 별표 1은 변경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개정필요가 없다고 판단됨.